#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87

발의연월일: 2022. 6. 13.

발 의 자:정태호·강득구·김정호

맹성규 • 민병덕 • 박광온

송갑석 • 윤준병 • 이성만

이수진 • 한병도 • 홍성국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업무를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용보증업무를 위한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일몰기한연장을 통해 향후 3년간 감면되는 지방세를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보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따라서최대 480억원의 추가 보증공급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음.

이에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업무를 위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56조의제3항).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5년 1 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①・② (생 략)	위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
	슬)
③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③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u>2022년 12월 31</u>	<u>2025년 12월 31</u>
<u>일까지</u> 지방세를 경감한다.	일까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